화성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12. 23.]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20.11.)」에 따라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신청 및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12.2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수도권(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을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 적용배제, 단독세대주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본 모집은 **[6. 입주자 선정기준 등(5p)]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2+2년)**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공고문내 2개의 단지가 있는 경우(A1단지, A2단지) 그 중 한 개 단지의 한 개 공급형을 선택하여 신청)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명	신청문의 전화번호
화성동탄2 A77-2BL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1600-1004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주택 유형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주차장 높이
화성동탄2 A77-2BL	영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0길 30-23	(영구임대 35단지)	538호	'20.10	2.3m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12. 공통 유의사항-지구 및 단지특성(15p)]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 유형	공급평형 (㎡)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모집 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화성동탄2 A77-2BL	영구	26A	26.91	14.1899	13.8166	54.9165	복도식/지역	388	8	
		26A1	26.91	14.1899	13.8166	54.9165	복도식/지역	150	23	주거약자용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단,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22.06.21.)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화성동탄2 A77-2BL의 경우 11층 이하에 공급됨).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주택 유형	공급 평형 (㎡)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5%)	잔금(95%)				
화성동탄2 A77-2BL	영구	26A 26A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565,000	128,250	2,436,750	51,100	(-) 1,000,000	1,565,000	53,180
			소득 100% 이하	64,740,000	3,237,000	61,503,000	33,720	(-) 60,000,000	4,740,000	158,720
			소득 100% 초과	69,056,000	3,452,800	65,603,200	35,960	(-) 64,000,000	5,056,000	169,290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만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전환한도가 다시 산정**됩니다.

4. 모집일정

단지명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발표	전자계약 체결
화성동탄2 A77-2BL	**'22.01.24(월) 10:00 ~ '22.01.26(수) 17:00** **※ 방문신청 ※** **1.26(수) 접수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접수를 도와 드립니다.	**2022.02.07(월)** 17:00 이후	**2022.02.08(화) ~ 2022.02.11(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2.04.07(목)** 17:00 이후	**2022.04.19(화) 10:00 ~ 2022.04.21(목) 17:00** **※ 현장계약 ※** **2022.04.21(목)**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모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 **신청서류 등을 모두 지참하신 경우** 방문신청(대행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7.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현황 게시)** 주택단지별 접수현황은 신청접수 마감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2002.12.24.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d>무주택</td><td>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세대
구성원</td><td>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tr><th>세대구성원</th><th>비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td></tr>
</tabl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란?

본 모집 공고 요건을 충족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1956.12.23.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6. 입주자 선정기준 등

아래 선정순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입주자)를 선정하되, 동 순위 내 경쟁시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장애인**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초과**	선정 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가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약자가 아닌 세대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가구원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각각 20%p, 10%p를 상향한 금액을 소득기준으로 변경 적용합니다.**

 - **예시) 1인가구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변경없음) [2순위] 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120% 이하, [4순위] 소득 120% 초과**

 - **대기순번은 선정범위(모집호수의 일정비율) 내에서 순위에 따라 부여되며, 동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순위)는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70% 이하 장애인'(2순위)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을 의미합니다.**

■ 소득 기준(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p.4)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094,142원	2,692,468원	3,589,957원
2인	2,737,521원	3,650,028원	5,018,789원
3인	3,120,260원	4,368,364원	6,240,520원
4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5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6인	3,696,824원	5,175,553원	7,393,647원
7인	3,889,012원	5,444,616원	7,778,023원

■ 소득 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거나 신청 정보와 달라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7.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01.24~26	02.07	02.08 ~ 02.11		04.07	04.19 ~ 04.21

▪ **청약 신청하기**

청약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 내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 : 2022.01.24(월) 10:00 ~ 2022.01.26(수) 17:00**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은 2022.01.26(수) 17:00까지 접수완료하셔야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번호 부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동인증서로그인→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	8단계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 서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방문 신청 : 2022.01.26(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가능**

- **신청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하니 제반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신청서류] 참조)**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	LH경기지역본부 마이홈 상담센터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구미동 175)
교통편	**(열차)**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버스)**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1, 116-3, 300, 37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약 도	
해당 주택단지	**화성동탄2 A77-2BL**

8.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12.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신청서류를 **서류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제출** 또는 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2.02.08(화) ~ 02.11(금) ※ 등기우편은 '22.02.11(금) 소인 분까지만 인정**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류 중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서류가 허위·위조·변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① 신청서류

■ 공통 신청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2호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공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 추가 신청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표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신청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 증빙**이 필요한 경우	1통
임신진단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통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소득70% 이하자로 장애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1통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신청서류(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1956.12.23.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기본제출 서류로 갈음)
②「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포함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①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02.11(금) 소인 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발송주소 ※		
단지명	**우편번호**	**주 소(접수부서)**
화성동탄2 A77-2BL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전세형 공급담당자

■ **현장방문 : 2022.02.08(화) ~ 02.11(금) 매 제출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유의사항**

- **서류 미비시 탈락될 수 있으니 제반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신청서류] 참조)**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신청 장소	**LH경기지역본부 마이홈 상담센터**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구미동 175)
교통편	**(열차)**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버스)**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1, 116-3, 300, 37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약 도	
해당 주택단지	**화성동탄2 A77-2BL**

9. 당첨자 등 발표 및 계약안내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① 당첨자 등 발표

- **당첨자(당첨여부, 당첨주택 동·호) 및 대기순번(당첨자가 아닌 사람 중 일정비율)은 2022.04.07(목) 17:00 이후 발표되며,**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당첨** 주택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으로 결정되며, 임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최대 1회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 대기순번 비율은 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에게 대기순번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번은 입주순위(p.5)에 따라 부여되며, 동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2022.06.21.)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등 예비입주자 제도와는 구분되므로 대기순번이 부여되더라도 종전 선정된 장기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예비입주자 지위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② 계약안내

■ 전자계약 : 2022.04.19(화) 10:00 ~ 2022.04.21(목) 17:00

- **전자계약은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PC 또는 모바일로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세부절차는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이내[2022.04.19(화)~2022.06.21(화)]에 잔금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는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각각 1회(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 발송하고,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 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전자계약(전자서명 여부 확인)하거나 방문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이 가능합니다.

■ **방문계약** **※ 방문계약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계약체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장소
화성동탄2 A77-2BL	**2022.04.21(목)** (10:00~17:00)	**2022.04.19(화) ~ 2022.06.21(화)**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이내에 잔금 납부 완료시 입주 가능**	LH 경기지역본부 마이홈 상담센터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계약 일시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의미함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립식 욕실(UBR) 설치된 화성동탄2 A77-2BL은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계약장소 비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사본)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적용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1. 주거약자용주택 설치항목 안내

■ 주거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거실(동체감지기 설치)는 2018.2.6이후 사업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금회 공급단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화성동탄2 A77-2블록 주거약자용 주택(26A1(주거약자)) 편의시설 안내**

구분	설치항목
현관	안전손잡이
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내 비상콜

12.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청약신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

	하고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갱신계약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갱신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갱신계약 시 소득수준 변경(소득 100% 초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시설이용등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 서측은 오산시, 남측은 평택시, 동·북측은 용인시가 입지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의 주요 도시 및 서울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국지도82호선, 국지도23호선, 지방도 317호선이 주변 주간선도로망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남측에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북측에는 기흥IC와 기흥동탄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에 인접한 국지도23호선 등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소음(진동)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에는 동탄일반산업단지, 화성동탄물류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신리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공동주택(A76-2, A78BL)의 공사착공은 2022년 이후로 예정되어있으며, 입주 이후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분진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지구외 구간에 물류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시 현장주변을 방문하여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동 물류단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 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주변을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한원CC 및 북리 저수지가 위치하고, 서측에는 동탄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부여건**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538세대) 및 국민임대주택(1,230세대) 혼합단지입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차단기 소음 및 경광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상가 및 아파트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필로티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가로등, 보안등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수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를 위한 사다리차가 접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 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약하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내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되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698대입니다.(상가 7대 별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3501동, 3502동, 3503동, 3505동, 3507동)는 차량 차단기 소음 및 경광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 • 소방차정차구간, 횡단보도 위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이 설치되어 전기실 근접동(3501동, 3506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3501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3503동, 3505동, 3507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크기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3501, 3507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가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면 또는 측면에 설치되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교목(큰키나무)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열교환기실1, 열교환기실2가 설치되어 근접동(3501동, 3505동, 3506동, 3507동)은 열교환기 및 펌프 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어린이집,경로당,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사회복지시설) 시스템에어콘 실외기가 건물지붕에 설치되므로 근접동(3501동, 3503동, 3507동)은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세대로 전달 및 조망이 저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소방 제연 휀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의 경우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19. 8. 22. 개교한 제26초(세정초)에 배정될 예정이며, 제25초는 개교시기가 미확정이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생은 방교중, 청림중, 목동중, 서연중 및 제12중('22. 3월 개교예정) 등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성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고등학생은 택지지구내 학교[한백고, 동탄중앙고, 이산고, 창의고(구 신리고), 정현고]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 또는 수원시(평준화지역)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팸플릿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은 모두 조립식 욕실로 시공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3503동, 3505동, 3507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지구 및 단지특성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13.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화성동탄2 A77-2블록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전용부분 수리용이성	★
공용부분 수리용이성	★

3)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4)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지붕(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지붕(간접면)	해당 없음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지역난방)
창호(직접면)	해당 없음		
창호(간접면)	적용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신청자명 :		핸드폰번호 :
단 지 명 :	[주택형:]	인터넷접수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추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